



LMO 연구시설 폐쇄 신고

LMO 연구시설 폐쇄 신고

-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더 이상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
- 연구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
- 연구책임자의 퇴직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종료 등

▶▶▶ LMO 연구시설의 폐쇄를 **미래창조과학부**에 신고

▶▶ **과태료** :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

< LMO 연구시설 폐쇄 신고서 작성예시 >

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9호서식] (개정 2013.12.10)

연구시설 폐쇄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 (신고인)	상호 ○○○○○○○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123-45-06789 (123456-0001789)	
	대표자 성명 홍길동	대표자 생년월일 1900. 00. 00	
	사업장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	전화번호 042-123-4567	

신고 내용

허가번호 (신고확인번호)	제 LML 12-000 호
사용기간	2012. 1. 1. ~ 2013. 12. 31. (2년)간
폐쇄일자	2013. 12. 31.
폐쇄사유	연구책임자 퇴직
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처리 여부	전량 멸균 처리

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시설의 폐쇄를 신고합니다.

2014 년 1 월 10 일

신청인(신고인)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
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

첨부서류	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

제출서류

1. 폐쇄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29호)
2. 첨부서류: LMO 폐기처리 증빙자료
 - 신규시설로 이전시 : 연구시설 운반관리대장
 - 멸균일지, 불활성화 사진, 폐기물처리확인증 중 택1
3. 기관 공문
4. 연구시설 신고확인서 원본 반납

※ 연구시설 폐쇄 시에는 기존에 연구하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완전히 불활성화 하여 폐기 처분해야 함.

